

신용정보활용체제 신구조문 대비표(2024.11.25)

현 행	개 정	비 고
(항목 신설)	V.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.신용정보주체의 권리 10)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▪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철회, 중단할 수 있습니다.	항목 신설

개인신용정보 보호규정 신구조문 대비표(2024.11.25)

현 행	개 정	비 고
제20조 (개인신용정보의 전송 등) ⑤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은 전송의 기한 및 방법,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, 거절이나 정지·중단과 관련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 1. <u>(신 설)</u> 2. <u>(신 설)</u> 3. <u>(신 설)</u> 4. <u>(신 설)</u> 5. <u>(신 설)</u>	제20조 (개인신용정보의 전송 등) ⑤ (좌 동) 1. 전송 기한 : 신용정보주체자의 요청일로부터 7 일 이내(영업일 기준) 2. 전송 방법 : 서면 자료 우편 발송 3. 전송요구 철회 방법 : 당사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4. 전송요구 거절 방법 : 당사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5. 전송요구 중단 방법 : 당사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	각 호 신설
(항목 신설)	제20조 (개인신용정보의 전송 등) ⑥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과 관련하여 정보주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. 이를 어길 경우 본 규정 제 31 조 제 2 항의 항목에 따라 지체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.	항목 신설
(조문 및 항목 신설)	제31조 (제재) ②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은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제재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 1. 정보주체로부터 수집·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2. 제 3 자에게 제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전송 요구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3.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.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5. 제 3 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·요구하거나 제 3 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	조문 및 항목 신설

	회·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. 정보를 전송받는 자가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·변경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, 위약금 등 금전적,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<전송요구권에 대한 정보주체보호 자체제재기준> <table><tr><th>징계 양정</th><th>부당 요구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정직(업무정지) 이상</td><td>50건 이상</td><td rowspan="4"></td></tr><tr><td>감봉</td><td>30건 이상</td></tr><tr><td>견책</td><td>10건 이상</td></tr><tr><td>주의</td><td>1건 이상</td></tr></table>	징계 양정	부당 요구	비고	정직(업무정지) 이상	50건 이상		감봉	30건 이상	견책	10건 이상	주의	1건 이상	
징계 양정	부당 요구	비고												
정직(업무정지) 이상	50건 이상													
감봉	30건 이상													
견책	10건 이상													
주의	1건 이상													